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2.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98호로 2023년 2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상치 못하게 발생  
하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안 제3조~제4조)
- 다.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 라. 지원단의 재난현장 설치(안 제7조)
- 마. 재난상황 공유·보고 및 활동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1.5.~1.25./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9개의 조문과 부칙 및 2개의 별표로 구성됨.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단의 구성을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구성된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영등포구와 자원봉사센터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하여 공동단장이 함께 대응하도록 한 것으로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7개의 자치구에서 공동단장으로 구성하고 있음.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에 실무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원단과 재난 상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지원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장이 지원단 활동을 평가하도록 규정함.

#### ○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발생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6. 1. 7.>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모집”이란 서신·광고·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을 내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모집자”란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8. 4.]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지원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2.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99호로 2023년 2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  
2022.10.27.)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나. 주민투표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라.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 신설(안 제8조제2항)
-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1.12.~2.1./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10.27.)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는 조례 제2조제4항에 주민투표권이 규정되어 있어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 주민투표 대상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대상범위가 조례로 한정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현행 조례 제4조),
-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안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에서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이 현 조례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되었으나, 「전자

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함. 한편,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신설하였는데(안 제8조제2항) 이는 기존의 읍·면·동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지자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항임.

- 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부터 안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가 상위법에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및 정비한 것이며,
- 그 외에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상충되는 규정(처리 기간 등)을 삭제하고(안 제18조제1항),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안 별지 제7호서식)

####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 또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 12.>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